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2 선고 2017가단106518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18. 5. 29.

판결 선고 2018. 6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,608,044원 및 그 중 61,362,000원에 대하여 2008. 1. 10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7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
 - 가. 피고1, 2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 - 나. 피고 3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임민성

별지